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04.2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3월 1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 4. 15)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에 따른 제명 정비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정하고,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용 어	도로명사업 도로명시설 건축물 등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시설 건물등

○ 「새주소위원회」 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 (안 제17조)

명칭	현행	→	개정안
	새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근거	영 제26조	→	법 제22조의2

○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 을 ‘법에 의한 도로명’ 으로 변경 (안 제5조)
 - 도로명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자주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 적용 가능.
- 도로명주소시설물의 낙하, 관리하자 등 발생으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등 가입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
-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영에 규정(제18조)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 (안 제12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
- 종전의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명칭 변경 (안 제16조)

안내시설	현행	→	개정안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안 제3조), 원인자 부담금(안 제4조)을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함.

○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 하는 사항

내 용	현행 조례조문	이관된 법령의 조문
○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 요건 : 시장등 필요, 주소사용자 1/5 신청 - 절차 : 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1/2 서면동의	제3조 제4조	영 제7조의3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절차 - 2회 방문고지 후 서면고지 실시	제5조	영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제6조 제7조	법 제8조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	제9조 제10조	영 제12조의2
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철도, 하천, 교량 등 배경자료	제13조	영 제10조 제1항 10호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제14조	법 제8의3,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지의 선정절차	제19조	영 제18조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	제26조	법 제22조의2 제4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현 영)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2일 「도로명 주소 법」으로 제명 및 일부내용이 개정되었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2009년 7월 2일 「도로명 주소법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의 명칭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 (안 제 1, 2조, 안 제6조, 안 제7조부터 제10조, 안 제21조)
- 나. 도로명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도로명을 적용** (안 제5조)
- 다. 도로명주소시설물의 낙하, 관리하자 등 발생으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등 가입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
- 라.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안 제12조)
- 마. 종전의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명칭 변경**(안 제16조)
- 바.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만 사용토록 함** (안 제3조, 제4조)

라.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일부 규정을 “삭제”

내 용	현행 조례조문	이관된 법령의 조문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 요건 : 시장등 필요, 주소사용자 1/5 신청 - 절차 : 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1/2 서면동의	§3~§4	영 §7의3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절차 - 2회 방문고지 후 서면고지 실시	§5	영 §21~§25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6~§7	법 §8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	§9~§10	영 §12의2
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철도, 하천, 교량 등 배경자료	§13	영 §10⑩10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14	법 §8의3,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19	영 §18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	§26	법 §22의2④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 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09. 1.28 ~ 2.17.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 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합동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

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u></p>	<p>〈제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u>제1장 총칙</u></p>	<p><u><삭 제></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법</u>」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u>」(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u>제2장 도로명의 변경</u></p>	<p><u><삭 제></u></p>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삭 제></u></p>
<p>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p>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

< 삭제 >

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 5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구청장은 제 5항 및 제 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구

청장은 영 제 21조 및 제 4조제 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 21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

< 삭 제 >

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3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 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틀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숫자“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 ㄹ로

< 삭제 >

< 삭제 >

<p>합</p> <p>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 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p> <p>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p>	<p>< 삭제 ></p>
<p>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p>	
<p>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p>

호판의 교부시기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신 설 >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제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구” 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신 설 >

③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로 한다.

< 신 설 >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 삭 제 >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0제항

< 삭 제 >

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 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 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

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0조제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

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서

< 삭제 >

< 삭제 >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 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

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

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 장은 제 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

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1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별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삭 제>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합동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10일 전에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 (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

는 업체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 9조제 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

<삭 제>

<삭 제>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

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관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 구성·운영**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 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등포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 22조

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

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 삭제 >

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장이 된다.

<p>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p><u><신 설></u></p>	<p><u>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회의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u> <u>3. 토의 및 심의결과</u> <u>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신 설></u></p>	<p><u>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